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1. 개정이유

물류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활용실적 위탁관리, 물류신기술 적용제품 확인 제도 도입 항목을 신설하는 등 일부 현행 규정의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물류신기술 활용 확대 및 체계적인 실적관리를 위해 물류신기술 활용 실적 접수·관리업무의 위탁 (안 제51조제2항제4호 신설)

- 물류신기술 활용실적의 접수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또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마련

나. 물류신기술 적용제품 여부 확인제도 도입(안 제46조의6 신설)

- 우수조달물품 등록, 성능인증 등에 물류신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신기술을 적용하여 제조한 제품 여부를 확인하려는 것임

다. 제도 명칭 명확화(안 제46조의3 제1항)

- '우수 물류신기술등'을 '우수 물류신기술'로 규정하여 제도 명칭 명확화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3의 명칭 중에 “우수 물류신기술등”을 “우수 물류신기술”으로 한다.

제46조의3 제1항 중 “우수한 물류신기술등(이하 “우수 물류신기술등”이라 한다)”을 “우수 물류신기술”으로 한다.

제46조의3 제2항 중 “물류신기술등”을 “물류신기술”으로 한다.

제46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6(우수 물류신기술 적용제품의 확인) ① 우수 물류신기술 적용제품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접수된 제품의 우수 물류신기술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46조의6를 제46조의7로 한다.

제51조제2항제1호 중 “제46조의5”을 “제46조의6”로, “공고”을 “공고, 적용제품 확인”로 한다.

제51조제2항제2호 중 “제46조의6제1항제3호”을 “제46조의7제1항제3호”로 한다.

제51조제2항제3호 중 "제46조의6제1항제4호"을 "제46조의7제1항제4호"로 한다.

제51조제2항제4호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46조의7제3항에 따른 활용실적 접수 및 관리 업무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6조의3(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우수한 물류신기술등(이하 “우수 물류신기술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p> <p>1. ~ 5. (생략)</p> <p>② 제1항에 따라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에 드는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p> <p><신설></p>	<p>제46조의3(우수 물류신기술의 지정 신청 등) ① ----- 우수 물류신기술----- -----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② ----- 물류신기술----- ----- ----- -----.</p> <p>제46조의6(우수 물류신기술 적용제품의 확인) ① 우수 물류신기술 적용제품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접수된 제품의 우수 물류신기술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p>
<p>제46조의6 (생략)</p>	<p>제46조의7 (현행 제46조의6과 같음)</p>

제51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생략)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평가기관 또는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

1. 제46조의3부터 제4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또는 지정기간 연장을 위한 신청의 접수, 심사, 의견 요청·청취 및 공고 업무

2. 제46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홍보 및 기술사업화 지원 업무

3. 제46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보유 기술정보의 제공 업무

<신설>

③ ~ ⑤ (생략)

제51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제46조의6-----

----- 공고, 적용제
품 확인 -----

2. 제46조의7제1항제3호-----

3. 제46조의7제1항제4호-----

4. 제46조의7제3항에 따른 활용실적
접수 및 관리 업무

③ ~ ⑤ (현행과 같음)